

# 공고내용

페이지 : 1/2

게재(요청)일자	2015-10-29	담당부서	주거정비과	권익생
고시공고구분	공고(일반공고)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1038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.공고			
내용	<p>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 호</p> <p>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4호(2011.05.06.) 촉진계획변경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2013-09호(2013.01.17.)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06호(2014.11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2호(2015.05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0호(2015.10.1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?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5년 10월 29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북 구 청 장</p> <p>?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.공고</p> <p>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</p> <p>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 정비사업</p> <p>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</p> <p>2. 공람 ? 공고 내용</p> <p>가. 사업명칭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</p> <p>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89-3번지 일대</p> <p>다. 시행면적 : 86,921.7㎡</p> <p>라.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9층, 19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1,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</p> <p>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13,043.2㎡, 녹지3,235.5㎡, 공원5,000㎡ 공공공지1,336㎡</p> <p>3. 공람기간 : 2015.10.29. ~ 2015.11.12.</p> <p>4. 시 행 자</p> <p>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(석관동, 장위뉴타운 10층 1002호)</p>			

내용

- 성 명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- 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33)  
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909-3695)
- 7. 관계도서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